

## 충청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# □ 제안이유

- '84년부터는 새마을공장의 지정이 없으므로 감면조례의 실효성 상실
- 농공지구에 관한 법규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토 대체
-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부업단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개편 되었음.
- 공업배치법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편 되었음.

### □ 주요골자

- 조례명칭과 감면목적 규정을 전면개편
  -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로 개정
-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에서 제외
  - 이미 지정받은 것은 구 조례 적용조치
- 농공지구는 농공단지토, 부업단지는 농어촌생산품 특산단지토 명칭변경
- 공업배치법시행령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수정

### □ 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-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-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-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